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6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2

I. 개요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06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8. 8.
- (3) 회 부 일 : 2025. 8.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과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조정하여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 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제2호).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김미애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원천징수세율(제129조) ○ 이자소득: 14% ○ 배당소득: <u>14%</u>	☐ 일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이자소득: (현행과 같음) ○ 배당소득: <u>9%</u>

* 김미애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60)

☐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어 소액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 현행법¹⁾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되어 기본세율을 적용받으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

□ 개정안은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소득임에도 이자소득과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문제 의식 하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 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²⁾.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소액주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 ISA)³⁾를 통해 일정 한도(서민형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 내에서 비과세, 또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개정안과 같은 9%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2) 개정안의 제안이유 참조

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반면, 개정안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의 효과는 초과누진세율 체계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귀속되어, 소액주주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자본시장 참여 유도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다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적지 않은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